

2023년 정간사 회의록 (6월)

일 시	2023년 6월 9일(금)	장 소	전북교직원 수련원
참석자 (14명)	김경욱 김기영 김민호 김상태 김진철 방호봉 홍동신 이희인 호 이거량 기량 이상찬 이우영 최남환 원영찬 전경자 조숙희		
결정사항	<p>1. 템북 법인 설립 과정 보고 (제안자: 전경자)</p> <p>가. 지난 2023년 2월 회의 결과 법인 설립 방향을 논의하였으나, 템북 설립 배경, 전문가 자문, 타출판사 법인 설립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그 설립 방향을 변경하고자 함.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><2023년 2월 회의 결과></p> <p>1) 사단법인(비영리)교사선교회에서 영리목적 사업자 등록 : 수익은 교사선교회 목적사업으로만 사용 가능하며, 임원이나 회원에게 배당 금지.</p> <p>2) 독립적인 주식회사(영리법인)설립 : 비영리법인인 선교회가 주주가 될 수 없음. 따라서 이사(주주)를 세워야 하는데, 누구를 세울 것인지? 또한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및 정체성 유지 등의 어려움이 있음.</p> <p>결정 : 교사선교회 정관 수정이 가능하다면 1번 안의 방향으로 알아보기로 함.</p> </div> <p>나. 템북 설립 초기 정간사 및 국장 연석회의(2018.2.20.)에서 '출판등록대리인을 통하여 개인사업자로 시작하고 차후에 필요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결정함' (첨부 1: 회의록)</p> <p>다. 타출판사의 법인 설립 과정을 검토한 결과 다음의 사항으로 인하여 교사선교회 산하가 아닌 독립적인 법인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게 여겨짐 (꿈미출판사, 좋은교사출판사, 민음사 등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대표의 법인 재산 사용 국세청 감사(개인 사유화 방지) ② 교사선교회 정관 수정 과정 불필요(비영리법인 목적과의 상충 방지) ③ 주주가 모든 회계 열람 가능(재정의 투명성) ④ 이사는 선교회 회원으로, 대표는 이사 중에 선발, 템북의 일정 수입금은 교사선교회에 기부한다는 규정 제정 ⑤ 비상장기업으로 설립될 경우 상장 기업에 비해 규제와 감시가 적으며 탄력적이고 추진력있는 사업 운영이 가능함. 단, 대표의 지분이 50%가 넘지 않도록 하여 대표의 독단을 견제할 수 있음. 또한 배당금 지급 없이 모두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구체적인 규정 제정이 추가로 필요함. <p>라. 위 ④와 ⑤의 규정을 제정한다면 2023년 2월 회의에서 논의된 1, 2항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임. 또한 비영리산하로 소속될 경우 수익의 50%이상을 교사선교회 사업자금으로 보내야 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출판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에 따라 출판 사역이 위축되고 소멸될 가능성이 있음. 또한 본사의 회계가 재무 담당, 복식 회계를 운영함에 따라 전문 주무관 고용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높은 인건비의 부담이 있음.</p> <p><<결정할 사항>></p> <p>가. 2018년 템북 설립을 위한 연석회의 결과에 따라 템북 법인 설립을 교사선교회 산하가 아닌 독립 법인으로 추진할 것인가?</p> <p>나. 회원들과 이 부분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?</p>		

<<결정>>

템북 법인을 독립으로 설립하기로 함. 단, 간사전략회의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최대한 자세하게 안내하기로 함.

2. 별무리학교 법인 관련 (제안자: 이상찬)

배경 : 2022년 6월 30일 별무리학교는 충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됨, 현재 충남도교육청은 학교의 모 법인인 교사선교회로 학교의 재정이 넘어가는 상황을 우려하여 회계 운영의 독립을 요청한 상태임.

가. 별무리학교의 동산 및 부동산의 운영 범위가 98억, 100억이 넘을 경우 국세청의 세밀한 감사 대상이 됨. 또한 동산의 경우 학생들의 기탁금(약 28억원)과 비교하여 건축비 5억, 정기예금 5억, 보통예금통장 약 11억 총 21억 자산 보유로 전체적으로 7억이 적자

나. 학교의 독립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

- 학교 회계의 독자 운영 및 투명성 유지
- 모든 교직원이 교사선교회 퇴직, 다시 학교로 재입사해야 함.
- 학교용으로 선교회 통장에 남아있는 현금을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학교통장으로 넘김
- 기탁금 28억원을 교사선교회가 책임지게 됨.

<<결정>>

가. 독자적 법인 전환을 2023년 신축 건물 공사 이후로 미룬다. (공사 대금 약 13억의 지급 현실화를 위해)

나. 이후 점진적 전환으로 이사회 개편 및 교사선교회 조직 변화를 연구한다.

다. 단, 교사선교회의 초기 정신을 지속 발전시키는 방안을 반드시 고려한다.

3. 무장과정 개편 안 (제안자: 김기웅)

가. 2020선언 보고서의 무장과정 개편 제안

1) 본부 제안 (주종호)

*1년 간의 과정 : 이전년도 연말신청 - 겨울수련회 격려 - 연중 지원(모임) - 해당년도 연말수료

개인영성 훈련과제	공동체적 실천과제							
	필수과제			선택과제 (본부사역 최소 1개 이상 참여)				
	양육	교육	선교	제자국	교사국	해외 선교국	교육 국	사무 국
현행 유지 일부 삭제 (사역계획서, 독서감상문)	3대 이상 경험	교육실천 아카데미 참여	선교강의 참여	*팀장 *팀원 *캠프팀 *디모데양육 *토요 학교	*팀장 *팀원 *YOU3 캠프	*팀장 *팀원 *TMTC	*팀장 *팀원	*팀장 *팀원

2) 교사국 제안 (장명수)

① 배경: 공동체가 인정하는 의미, 2011년부터 무장과정 시작 (첨부 1: 집중훈련 체계)

② 제안사항

-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다루기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앙과 삶과 교육에 관련된 내용 - 지역 리더들을 지원해주는 방향 - 심플하고 명료화하기 - 변화는 점진적으로 추진하기 - 추수지도 또는 관리 (양육을 하지 않는 휴지기가 많은 경우) <p>나. 템연구소의 연구보고서 참고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교사선교회 양육 시스템 개선을 위한 집중훈련 개선방안 연구 2) 지역사역의 어려움에 관한 사례 연구 <p>다. 교사국 집중훈련 운영 방향 (2023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집중훈련 개선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3대 양육 → 계속 넣기로 함, 지원 자격에 공동체와 함께한 기간, 사역한 기간 넣기 -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조치 : 무장과정 암송시험 폐지, 강의 주제 다양화 하기 - 장기적으로 지역과 캠퍼스 양육을 돕기 위한 논의와 연구 필요 2) 집중훈련 프로그램 모델 구상 (과정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양육 전체적인 커리큘럼(가이드라인) 만들기 -기존 훈련들과의 연계(전도훈련, TMTC 등) -징모과정+양육지원 프로그램 -징모과정: 양육 오리엔테이션 강의(확립과정) → (캠퍼스에서 PLTC: 징모과정이자 안내과정) <p><<논의 제안>></p> <p>가. 정간사 공동 연구 (내외부 인사 및 기관 활용)</p> <p>나. 2023년 리더십 팀 프로젝트 운영</p> <p><<결정>></p> <p>올 해 여름에 무장과정 워크숍을 진행하며 팀별 프로젝트 구상을 시작해 보기로 함. 무엇보다 사역자들을 지원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맞는 프로젝트를 구상, 그 외에도 필요한 프로젝트를 구상하여 실천해 보기로 함. 이 일은 템연구소(김기웅, 김선배)가 주최하여 진행하지만, 정간사들도 팀별 프로젝트에 소속되어 함께 하기로 함.</p>
<p>기타 논의</p>	<p>1. 춘천교대 사역비 사용 안 (제안자: 김만호)</p> <p>가. 춘천교대 사역비가 계속 누적되어 현재 500만원에 이름.</p> <p>나. 이 금액을 예비교사국에 일임하여 예비교사국에서 지난 회의에서 제안했던 '구제사역 프로젝트'의 자금으로 전환하고자 함.</p> <p><<결정>></p> <p>위 사항에 모두 찬성함.</p>

교사선교회정간사 및 출판사설립위원 연석 회의

1. 배경

정간사 및 국장 연석회의(2018.01.22.)에서 논의한 교사선교회출판설립건에 대하여 출판사설립위원회의 제안서¹⁾를 검토하기 위함입니다.

2. 내용

일시		2018. 2. 20. 19:00~22:00
참석자	정간사	이종우, 엄월아, 권한영, 서정자, 이거량
	출판사 설립위원	김만호, 김연우, 김중훈, 고광철, 류창기
안건		협의내용
1.설립방식		<p>가. 정간사회의 교사선교회출판설립 승인을 기반으로 설립방식에 대하여 논의함.</p> <p>나. 출판사설립위원회가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교사선교회가 직접 출판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논의함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교사선교회 산하에 출판사업장 설립을 위한 정관 개정의 필요 -비영리단체인 교사선교회 안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출판사와의 상충 -출판사 법인 설립을 위한 등록이사진 구성의 어려움 -등록이사와 실무자가 분리로 운영의 비효율성 -법인설립으로 인한 회계처리의 복잡성 <p>다. 대리인으로 개인사업자(이하 출판등록대리인)를 통하여 출판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결정함.</p> <p>라. 출판등록대리인을 통하여 개인사업자로 시작하고 차후에 필요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결정함. 단, 출판등록대리인과 용역계약서를 체결하고 법인 전환에 따른 포괄양도양수²⁾에 대해 적시함.</p>
2.설립절차		<p>가. 출판등록대리인 선정과 출판사무간사의 채용에 대하여 논의함.</p> <p>나. 출판등록대리인과 출판사무간사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제안을 논의함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개인 명의를 허락할 출판등록대리인 선정의 어려움 -출판사 운영을 위해 출판등록대리인과 출판사무간사가 근거리에서 거주 -출판등록대리인과 출판사무간사의 분리 운영은 신뢰의 문제로 인식

1) 교사선교회출판사설립위원회제안서(2018.02.20.)